H - 123 - 2013

불산·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

2013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박종태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P-58 2012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 지침
- KOSHA GUIDE H-57 2012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
- Safe Operation of Hydrofluoric Acid Alkylation Units, API RECOMMENDED PRACTICE 751, FOURTH EDITION, NOVEMBER 2012
- NIOSH Emergency Response Safety and Health Database : HYDROGEN FLUORIDE/HYDROFLUORIC ACID : Systemic Agent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7(사업주 등의 협조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(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2월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불산·불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(보건조치), 제 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한다)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불산/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고응급대응 조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불산/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불산"이라 함은 불화수소(HF, Hydrofluoric acid, 플루오린화 수소)의 수용액으로 불화수소산 또는 플루오린화 수소산으로도 불리운다.
 - (나) "자급식 공기호흡기(SCBA, Self-contained breathing apparatus)"라 함은 압축공기용기가 부착된 공기호흡기로 연기나 유독가스로 오염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착용하는 보호장구로서 압축공기의 압력을 조정하는 압력조정기와 공기를 압축하여 저장한 압축공기 저장용기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한 면체,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불산·불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

불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<표 >]과 같다. 불화수소는 분자량 20.01, 녹는점 -83.53℃, 끓는점 19.51℃이다. 불화수소는 독성, 부식성, 불연성의 성질을 가진 액화가스이며, 가스는 무색이지만, 공기 중의 수분과 접촉하면 흰색의 흄을 발생한다. 불화수소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, 열을 발생하여 매우 부식성이 강한 불산(Hydrofluoric acid)을 형성하게 된다.

<표 1> 불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	-성
---------------------	----

항 목	내 용
물질명	불화수소
분자량	20.01
CAS No.	7664-39-3
화학식	HF
물리적 성상	무색의 기체, 강한 자극성 냄새(냄새의 역치 : 0.042 ppm)
비중	0.988 (20 ℃)
녹는점	-83.53℃
꿇는점	19.51℃
증기압	760 mmHg (20 ℃)
용해도	물에 잘 녹음

5. 용도 및 노출

5.1 용도

- (1) 불화칼슘[형석, $CaF_2(S)$]과 진한 황산 (H_2SO_4) 을 반응시켜 불화수소 제조
- (2) 불화수소를 냉각시켜서 액체인 순수한 불산 제조
- (3)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, 탄화수소 제조의 촉매제

- (4) 유리를 서리 내린 듯 흐리게 하거나 식각 및 연마하는 용액
- (5) 테프론 생산 : 테프론(Polytetrafluoroethylene(PTFE)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4-플루오린에틸렌(CF2CF2)를 합성
- (6) 금속 주조물에서 모래를 제거하는 용액
- (7) 반도체를 제조할 때 실리콘 판(웨이퍼)의 식각
- (8) 나노미터 크기의 매우 정교한 미세가공
- (9) 치약에 첨가하는 불소화합물 제조
- (10) 핵 연료로 사용되는 불소가 결합된 우라늄 화합물(UF₆)을 합성

5.2 주로 노출되는 공정

- (1) 상기 5.1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.
- (2) 불소제조와 불화알루미늄제조 시에 노출될 수 있다.
- (3) 우라늄 정제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.

6. 불산·불화수소의 독성 및 인체 영향

6.1 독성

- (1) 불산은 강한 자극성을 가진 무색 액체로 강한 부식성을 나타낸다.
- (2) 높은 농도에서 생체 조직과 접촉 시 즉각 괴사반응 및 통증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.

H - 123 - 2013

- (3) 염산과 질산 등과는 달리 불산은 화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쉽게 피부내로 침투하여 기저 조직을 손상시키고 혈류로 흡수된다.
- (4) 대부분의 불산/불화수소 노출은 피부, 눈과의 접촉 및 가스 흡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부 및 심부조직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.
- (5) 흡수된 불산/불화수소는 체내 칼슘과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염을 생성한다. 이 과정에서 저칼슘혈증 및 저마그네슘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.
- (6) 불산/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및 부산물과, 불산에 노출된 근로자에 의한 오염물, 부산물에 의한 이차 오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.

6.2 농도에 따른 인체 영향

(1) 급성 영향

- (가) 불화수소는 심한 호흡기 자극제이다. 불화수소를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. 노출 후 1-2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그이후에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청색증 및 폐수종이 발생 할 수 있다.
- (나) 용액(불산)이 피부에 닿으면 심한 동통성 화상을 일으킨다.
- (다) 경피 또는 흡입되면 상당량의 불산이 흡수되며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 혈증이 초래되어 부정맥이 생긴다.
- (라) 불화수소의 노출농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.
 - ① 120 ppm 농도에 1분 동안 노출된 사람에서 결막염과 호흡기 자극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다.
 - ② 30 ppm 농도에 5-6분간 노출된 사람에서는 눈, 코 및 피부 자극증상은 나타났지만 호흡기 자극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.

H - 123 - 2013

- (마) 불산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조직파괴가 심하게 일어난다. 불산노출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된 불산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.
 - ① 50% 이상의 농도에서는 즉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심한 통증을 동반한 화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
 - ② 20-50%의 농도에서는 노출 후 1시간에서 8시간 경과 후 지연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.
 - ③ 20% 미만의 농도에서는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.
 - ④ 희석된 용액에 닿은지 모르고 있다가 늦게 씻으면 심한 화상을 입는다.

(2) 만성 영향

- (가) 1년 이상 불소화합물에 지나치게 반복 노출되면, X-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뼈의 음영농도가 증가되며, 뼈에 불소 침착증이 일어난다. 처음에는 요추 및 골반에 불화물 침착소견이 먼저 나타난다.
- (나) 요 중 불화물 배설량으로 총 섭취량을 알 수 있다. 작업 후의 요 중 불화물 농도가 8 mg/L 이하인 때는 골경화증이 나타나지 않는다.

6.3 노출 기준

- (1) 고용노동부 노출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-38호,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)은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시간가중평균농도(Time Weighted Average: TWA)로 0.5 ppm이고, 최고 노출기준(Ceiling)로 3 ppm(2.5 mg/m³)이다.
- (2)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(ACGIH)는 눈과 코의 자극증상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불소침착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여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할 때 시간가중평균농도(Time Weighted Average: TWA)로 0.5 ppm이고, 최고 노출기준(Ceiling)은 2 ppm 으로 정하였다.

H - 123 - 2013

(3) 생물학적 노출기준으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(ACGIH)는 요중 불화물은 작업 전 3 mg/g Cr, 작업후 10 mg/g Cr 으로 제시하고 있다.

7. 응급대응

7.1 응급 처치

- (1) 피부의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(=25.864 cm²) 이내로 작고, 불산 농도가 20%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될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충분하다.
- (2) 통증의 완화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다. 그러므로 국소 진통제 또는 마취제는 사용을 금한다.
- (3) 전문적 의학적 처치 및 병원으로 즉각 이송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눈과의 접촉, 위장관 섭취, 기도 흡입한 모든 경우
- (나) 생식기, 항문, 외이도, 손발에 노출된 모든 경우 및 불산농도 또는 노출 범위를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.
- (다) 가스형태의 불화수소에 노출되어 호흡기 자극을 느낀 경우
- (라) 불산 농도가 20% 이상인 경우는 치명적 피해가 잠재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. 따라서 화상을 입거나 통증이 있는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.

7.2 피부 화상

- (1) 불산이 피부와 접촉한 경우, 즉각 홍반이 생기며 종종 조직의 응집으로 인해 백색 또는 회색으로 변색될 수 있다.
- (2) 낮은 농도의 불산에 노출된 경우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며, 수포가 발견될 경우, 즉시 환부를 열어두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.

- (3) 모든 피복은 반드시 탈의해야 하며,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이상 씻어낸다. 조직에 흡수되는 시간 이전인 5분이내로 최대한 빨리 씻어내도록 한다.
- (4) 즉각적인 전문 의학적 처치 및 응급처치를 취한다.
- (5) 2.5%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주고,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해서 환부를 마사지한다. 환자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(6)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(=25.864 cm²) 이상인 경우 즉시 입원하여 집중치료실로 보낸다. 최소 24~48시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한다.

7.3 눈 접촉

- (1)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씻어낸다.
- (2) 오염원을 제거하는 동안에도 쉬지 말고 계속 씻어 내야하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제거 가능하다면 제거하고 씻어 낸다.
- (3) 기름, 연고, 기타 불산 피부화상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(4) 즉각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.

7.4 불화수소 흡입

- (1) 주의 깊게 관찰하며, 즉각 전문 병원으로 후송한다. 집중 관리를 위해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.
- (2) 불산 누출 구역에서 즉각 피해자를 멀리 이송하여 추가적인 흡인을 방지한다.
- (3) 만약 호흡하지 않는다면, 즉각 인공호흡을 실시한다. 이때 구강 대 구강법은

지양한다.

(4) 마스크로 100%의 산소를 공급한다.

7.5 불산 섭취

- (1) 즉각 전문병원으로 후송하여 집중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.
- (2) 강제로 구토를 유발시키거나 베이킹소다 또는 구토제를 먹이지 않는다.
- (3) 1~3컵 정도의 우유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함유한 10% 농도의 제산제를 먹인다.

7.6 손톱 화상

- (1) 15분 간격으로 2.5%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바르고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부를 마사지한다. 통증이 재발할 경우 같은 처치를 반복한다.
- (2) 대체 치료법으로서, 손톱을 차가운 0.13% 제피란(Zephiran) 용액(살균· 방부제인 벤잘코늄의 상품명)에 담가 놓는다. 이때 동상 발생에 유의한다.

7.7 비상대응조치

- (1) 누출 시 근로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비상경보를 내린다
- (2) 대피경보 시스템, 원격조정 긴급차단 밸브, 살수 설비, 신속한 제품 이송, 인근 주민 고지 등 비상대응 시스템을 갖춘다.
- (3) 사고 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갖추고 피난처에 개인보호구를 구비해 둔다.
- (4) 노출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킨다.

H - 123 - 2013

- (5) 응급조치 키트를 갖추고 이를 보관할 냉장설비를 구비한다.
- (6) 후송 시스템을 갖추어, 사고발생 시 전문병원에 즉각 후송 후 바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8. 불산·불화수소 취급자에 대한 응급대응 교육

8.1 교육

- (1) 단독으로 불산/불화수소를 다루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사전 훈련 및 고지를 거쳐야 하다.
- (2) 단독으로 불산/불화수소를 다루는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근무 장소에 비치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(3) 취급공정에 배치할 근로자에게는 불산/불화수소의 물리·화학적 특성, 개인 보호구, 안전한 취급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불산/불화수소 취급설비를 점검·정비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도 불산/불화수소의 물리·화학적 특성, 개인보호구, 안전한 취급방법, 응급조치 요령 및 기계 장치의 특성, 사용금지 재질, 안전 정비 절차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.
- (5) 이상의 내용에 추가하여 불산/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
- (가)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불산/불화수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(나) 불산/불화수소에 의한 중독과 건강장해 예방대책

H - 123 - 2013

- (다)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재 조치 사항 및 유지, 관리 요령
- (라)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
- (마) 기타 안전·보건상의 조치 등

8.2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절대 혼자 떨어져서 근무하지 않는다.
- (2) 누출감지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.
- (3) 응급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해 놓는다.
- (4) 누출시 중화시킬 수 있는 수산화칼슘(Ca(OH)₂), 산화칼슘(CaO) 혹은 염화 칼슘(CaCl₂)을 준비해둔다.
- (5) 개인보호구(내산성 보호복, 호흡용보호구, 내산성 안전장갑, 내산성 보호 장화 등)를 철저하게 착용한다. 불산을 다룰 때는 피부 전체는 물론 보호 안경까지 착용을 해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.
- (6) 불산/불화수소 관련 모든 컨테이너 및 파이프, 오염물 및 부산물에 라벨링을 한다. 이때 물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.
- (7) 작업구역 표시를 철저히 한다.
- (8) 사전에 누출을 대시한 누출시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인식하고, 누출상황별 비상조치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..
- (9) 불산이 엎어지거나 쏟는 것을 막는다.
- (가) 불산 추급설비의 뚜껑, 플랜지, 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교체주기 준수 및 적정가스켓을 사용하고, 예방정비를

실시한다.

- (나) 탱크 컨테이너와 화학설비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순서를 준수한다.
- (다) 불산 공급탱크 등 화학설비를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.
- (라) 불산 탱크 수리 시 탱크내부 잔류 불산 제거를 한 후에 실시한다.
- (마) 밸브교체작업 후 재사용하기 전에 배관과 밸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누설시험을 실시한다.
- (9) 사고가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 한다. 불산의 누출 및 실내농도증가 시에는 신속하게 작업중단조치를 한다.
- (10)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작업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고 근로자들을 교육한다.

9. 개인보호구

9.1 보호구 등급 선정

작업환경 및 취급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의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한다. 보호구는 $A \sim D$ 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.

- (1) A등급: 완전 밀폐형 내산 양압 자가호흡장치(SCBA)로서 불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장치 및 설비 등으로부터 고농도, 대량의 불산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 이 장비는 보호복 내에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라디오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.
- (2) B등급: 송기마스크, 내산성 장갑, 내산성 고무장화와 내산 자켓 및 내산 작업복. 만약, 작업장의 위치, 작업 내용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급식 공기호흡기(SCBA) 또는 공기 호흡기

H - 123 - 2013

등을 비치한다. 이 장비는 저농도의 불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.

- (3) C등급: 전면 보안면, 추가 고글, 내산성 장갑, 내산성 고무장화와 내산 자켓 및 내산 작업복. 불산/불화수소가 포함된 장비를 다루는 일상적인 근무 시 사용한다. 단 불산/불화수소의 직접적인 노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.
- (4) D등급: 전면보안면 또는 고글, 내산성 장갑, 내산성 고무장화와 내산 자켓. 불산/불화수소가 포함된 장비가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다.

9.2 보조작업자 및 취급장소

- (1) A, B 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, 반드시 주 작업자와 함께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춘 보조작업자가 같이 동행해야 한다.
- (2)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.

9.3 사용 후 관리

- (1) 사용 후에는 개인보호구를 즉시 중화하고 세척해야 한다.
- (2) 보호구의 중화 및 세척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3) 중화 및 세척과정 시 노출될 위험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.